

CCITT Ad Hoc Group회의를 다녀와서

백 영 기 표준화국 연구조사부장

1988년 11월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 이후 4년만에 개최되는 CCITT총회가 금년 3월 1일부터 12일까지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총회에 대한 의제 준비반을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제네바 회의는 1990년 2월 이후 3년동안 CCITT Ad Hoc Group에서 연구 해왔던 검토 사항들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가올 3월의 CCITT 총회에 보고기로 되어있는 현안들을 처리하는 최종 회의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동 회의는 CCITT 10차 총회에 상정될 일반 의제 분야의 표준작성방법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체신부에서는 4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여 필요한 정보 및 동향을 수집토록 하여 CCITT총회의 한국 참가단 대응방안 수립을 모색할 수가 있었다.

이번 회의에는 25개국으로부터 91명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주관청이나 통신 사업자에서의 참가자들이었으며, CCITT연구반의 조직 및 담당과제 변경, 그리고 작업 절차등을 결정하는 내용이라서 그런지 CCITT전문 사무국의 각 연구반별 담당 직원들이 별도로 참석하였다.

개회식에는 ITU사무총장이 환영인사를 통해 회의의 안전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좋은 해답을 찾아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Ad Hoc Group의장이 회의의 진행을 맡아 각국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는 CCITT전문 사무국측과 CCITT위원장으로 부터 조언을 받아 결론을 지어나갔다. 회의장은 ITU본부 지하 2층에 있는 대회의실(약 300명 수용)을

양분하여 사용하였으며 6개국의 통역언어(영, 불, 서, 러, 중, 아랍)를 사용하여 동시 통역을 제공하였다.

이전 CCITT Ad Hoc Group회의 기간중에는 CCIR Ad Hoc Advisory Group회의(93.1.19~1.27)도 별도로 개최되었는데, 1일 간의 일정으로 각 그룹의 의장이 공동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합동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합동회의의 의장단석에는 ITU사무총장과 CCIs양 위원장, 그리고 CCIs전문 사무국 직원이 동참하여 회의 진행을 거들었고, 짧은 시간내에 주어진 의제를 해결하다보니 별도의 지원그룹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즉석에서 10명 내외의 소규모 Editing Group이 결성되어 회의자료의 준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1. CCITT Ad Hoc Group 개요

가. CCITT Ad Hoc Group 소개

1988년 11월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 CCITT 제9차 총회에서는 결의18으로(Resolution 18) "CCITT 작업방법과 조직의 진화"를 채택하여, CCITT에서의 표준화 활동에 대한 재평가를 총회 이후에도 계속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작업을 담당하게 될 CCITT Ad Hoc Group의 설치를 결정하였다.

이 그룹의 주요 목적은 CCITT가 전기통신 표준화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탁월한 위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특별 제안을

개발하는 것으로, 1990년에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회의 참석자들은 결의 17의 내용을 상기, 펠버른 정신의 4대 원칙 즉, 현대화(Modernization), 유연성(Flexibility), 작업방법과 조직에서의 효율성(Efficiency) 및 양질의 권고작성을 위한 협력(Cooperation)에 중점을 두고 주어진 작업을 착수하였다.

특히, Ad Hoc그룹은 CCITT가 표준화 분야에서 회원국들이 제안하는 내용을 충분히 배려하고, 연구반(SG)의 조직과 작업방법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하기로 하여 다음 사항들을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CCITT 연구반(SG)의 조직
- CCITT 작업방법
- CCITT의 문서화 및 문서교환을 위한 전자우편(Electronic Mail)사용

- 향후의 CCITT연구 프로그램을 위한 연구 과제들에 대한 상세한 연구 절차
- ITU이외의 타 국제 및 지역 표준화기구와의 표준화 활동 협력
- CCITT와 CCIR상호간의 협력
- CCITT와 BDT와의 관계

나. CCITT Ad Hoc Group의 조직 운영도

K.Hoffman(캐나다)의장과 M.Kato(일본)부의장을 임명하여 Ad Hoc Group의 모든 연구작업은 그룹 자체내에서 수행되었는데,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무작업반(WP), 연구과제책임자(Special Rapporteur), 편집 그룹을 구성 운영하였다.

조 직	의장 또는 연구과제 책임자	연 구 분 야	비 고
WP 1	B.W.Moore (영 국)	CCITT의 작업방법	
SWP A	W.Saleh (미 국)	전자적 문서 처리	
SWP B	R.Holleman (미 국) P.Darling (호 주)	표준화 작업계획 및 관리	
SWP C	E.J.Exton (캐나다)	SG의장과 부의장, WP의장들의 임무등	
SWP D	R.F.Brett (캐나다)	다른 표준화 기구과의 협력관계	
SWP E	A.K.Cabrea (호 주)	권고 및 자료의 발간 절차 등	
WP 2	P.Gonin (프랑스)	CCITT의 연구반 구조	
SWP	M.Israel (캐나다)	연구반의 책임 분야와 위임 사항	
	E.J.Exton (캐나다)		
Drafting Group	A.K.Cabrera (호 주)	최종 결의안 내용작성	
	H.L.Marchese (미 국)		

다. CCITT Ad Hoc Group회의 개최 실적

회 의 명	개 최 기 간	개최장소	회 의 주 요 결 과	비 고
실무작업반 회의	1990. 2.26~ 3. 2	제네바	Ad Hoc Group 조직 및 운영방침 결정	한국불참
제 1 차 회 의	1990. 9.10~ 9.14	"	향후의 연구반 구조결정	한국불참
제 2 차 회 의	1990. 1.29~ 2. 8	"	12개의 Draft Text작성	한국불참
제 3 차 회 의	1991.10.28~11. 1	"	- 1 개의 Draft Text작성 - 12개의 Draft Text수정 보완 - CCIR과의 연구과제 합병검토	19개국 82명 참석
최 종 회 의	1993. 1.19~ 1.26	"	- 4개의 Draft Text작성 - 제10차 CCITT총회보고내용 최종결정	25개국 112명 참석

라. CCITT Ad Hoc Group에서 작성한 Draft Test

Draft Test 명	주요 내용	초안작성시기	총회준비자료명
결의초안 Res. 18/1	전자적 문서처리(EDH)	2차 회의	-
결의초안 Res. 18/2	표준화 전략 검토·계획	2차 회의	AP X-23 (4절)
결의초안 Res. 18/3	CCITT 연구과제 승인	2차 회의	AP X-23 (7절)
결의초안 Res. 18/4	CCITT 연구반(SG) 관리	2차 회의	AP X-23 (3절)
결의초안 Res. 18/5	라포타(Rapporteur)임무	2차 회의	AP X-23 (3절)
결의초안 Res. 18/6	CCITT 권고(안)승인	2차 회의	AP X-23 (8절)
결의초안 Res. 18/7	CCITT 권고의 발간	2차 회의	AP X-26
결의초안 Res. 18/8	CCITT 권고의 분류	2차 회의	AP X-26
결의초안 Res. 18/10	CCITT 권고의 보충문	2차 회의	AP X-26
권고초안 Res. 18/a. 2	CCITT 용어의 생산, 수정, 공표	2차 회의	AP X-26
결의초안 Res. 18/9	CCITT 연구반의 책임과 위임사항	2차 회의	AP X-24
제안초안	CCITT의 연구반 구조	2차 회의	AP X-24
결의초안 Res. 18/14	기타 표준화 기구와의 협력	3차 회의	AP X-24
권고초안 A.23	정보기술, 텔레매틱 서비스, 데이터 전송에서의 기타 국제 기구와의 협력	최종회의	AP X-25
결의초안 Res. 18/11~12	전자적 문서처리(EDH)	최종회의	AP X-23
결의초안 Res. 18/13	정보게시판	최종회의	AP X-23

2.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

가. 제네바 추가전권위원회의 결과 통보

1992년 12월에 개최되어, 고위 위원회(HLC:High Level Committee)권고를 바탕으로 1865년이래 127년동안 유지해온 기존의 ITU체제를 대폭적으로 개편하게 된, 제네바 추가전권위원회의의 결과가 CCITT Ad Hoc Group 활동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의장의 강조사항으로 말미암아 편집그룹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이 통보되었다.

- 총 137개국 756명 참석
- 개발도상국들의 많은 참석인원과 깊은 관심
- 전자적 문서 기록 및 교환방법(EDH)에 대한 결의 채택
- 기존 ITU의 회의 및 상설기구를 기능에 따라 3분야로 통폐합하고 업무조정
 - 전파통신분야 (RS:Radiocommunication

Sector)

- 전기통신표준화분야(TSS: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 개발분야(DS:Development Sector)
- 현재의 CCIR과 IFRB사무국을 통합하여 전파통신국(RB:Radiocommunications Bureau) 설치
- 현재의 WARC기능을 수행할 세계전파통신회의(WRC: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신설
- 현재의 CCIR총회 기능을 수행할 전파통신총회(RA: Radiocommunication Assembly) 신설
- 현재의 CCIR일부 표준화활동분야와 CCITT를 통합하여 표준화국(TSB: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Bureau) 설치
- 현재의 CCITT총회 기능을 수행할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WTSC: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

zation Conference) 신설

- 각 분야의 전략 검토와 연구과제 우선순위를 결정할 자문반 구성
-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WDC: World Development Conference)를 신설
- 결의18과 관련하여 5개의 결의(Resolution)를 채택
 - 결의 COM 4/1 : RS와 TSS간의 업무 할당
 - 결의 COM 4/2 : 권고안의 승인
 - 결의 COM 5/4 :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자료, 발간물들에 대한 전자적 이용
 - 결의 COM 5/6 : 지역전기통신기구들과의 협력강화
 - 결의 PLEN/6 : RS와 TSS에서의 자문반 설치

또한 총회 결의 107에 의거하여 구성된 CCIR조직 개편을 위한 실무작업반(WP: Working Party)은 CCIR의 연구반 구성에 대한 재편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회의는 <표: 1>과 같이 결의106과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ITU의 조직, 기능에 대한 재평가를 목적으로 한 고위위원회(HLC)의 권고 37(Recommendation 37)이 1991년 4월에 발표되었고, 이 중에서 CCITT와 CCIR의 표준화 기능 통합이 제안되었던 바, 91년 6월의 합동회의에서부터는 이 권고의 구체화에 대한 CCIR에서의 표준화 기능들에 대한 기본방침, 각 연구반의 재편성, 전파통신총회(RA)와 관련된 연구반의 업무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나. CCIR과의 연구과제 통합

1) 개요

CCIR 및 CCITT에서는 유·무선통신의 결합, 통신과 방송기술의 융합현상등에 따른 통신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며 표준화 작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작업의 효율성과 신속함을 가일층 꾀하기 위해 각각 Ad Hoc Group을 구성, 회의를 개최해 나가면서 각 분야의 조직, 연구과제내용, 작업방법등 전반적인 측면에 걸쳐서 검토를 해오고 있다.

CCITT Ad Hoc Advisory Group은 1990년 5월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된 제17차 CCIR총회의 결의106에 기초하여 설치되었는데 향후의 CCIR활동의 전략적인 재평가 및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고위위원회 권고 37(HLC Rec.37)내용 소개

HLC권고 37에는 현재의 CCIR활동분야 중에서 표준화분야(TSS)로 이관되어야 할 연구과제들을 "공중전기통신망에서의 무선시스템 상호 접속과 그 접속에 요구되는 성능에 관한사항"들로 명시하고 있는데, 1993년 3월 1일 부로 적용될 신 ITU조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두 분야의 업무범위는 아래와 같다.

- 전파통신분야(Radiocommunication Sector)의 업무
 - 스펙트럼 관리 및 등록에 관한 활동 등
 - 지상 및 우주무선통신에서의 주파수 이용에 관한 과제 연구와 권고작성
 - 정지궤도 이용에 관한 과제연구와 권고작성
 - 무선시스템의 특성 및 성능에 관한 과제

<표1>

일 시	결의 106회의	결의 107회의	합 동 회 의	비 고
1991. 2. 5 ~ 2. 8	제1차 회의	-	-	
1991. 6. 10 ~ 6. 12	제2차 회의	제1차 회의	제1차 회의	21개국, 36명
1992. 6. 22 ~ 6. 25	제3차 회의	-	-	
1993. 1. 19 ~ 1. 27	제4차 회의	제2차 회의	제2차 회의	

연구와 권고작성

- 무선국의 운용에 관한 과제연구와 권고작성
- 조난 및 안전을 위한 무선통신에 관한 과제연구와 권고작성
- 표준화 분야(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의 업무
- 현 CCITT활동분야인 전기통신의 기술, 운용, 요금등에 관한 과제연구와 권고작성
- 현 CCIR연구과제 중 공중전기통신망과의 접속등에 관한 과제연구와 권고작성

3) 표준화 분야(TSS)로의 이관대상 연구내용

HLC권고의 업무 한계 규정에 따른 과제조정 대상으로서는 [표2]와 같이 SG4, SG8, SG9, SG10, SG11의 일부 과제와 CMTT이다.

이 중 CMTT는 대부분의 과제가 표준화 부문으로의 이관대상으로서, CMTT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방송사업자 또는 방송 기구들에 대한 기존 CCIR활동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현재의 CCIR과 CCITT공동 연구반 체계와 같이 유지하되 연구반 관리 는 표준화 분야에서 하기로 하였다.

<표2>

연구반명	주요 연구 분야
SG 4	고정위성업무
SG 8	이동(육상, 해상, 항공)업무, 이동위성업무
SG 9	고정업무의 무선중계
SG 10	음성 방송 업무
SG 11	TV 방송업무
CMTT	음성 및 TV 신호 전송

한편, 이번 합동회의에서 협의된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RS와 TSS간의 업무할당에 관한 원칙과 작업 절차를 위한 초안결의(Draft Resolution)을 작성하였고 양 분야의 총회 승인을 거쳐서 시행.

- 현재 공동 관심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음의 연구항목들에 대해서는 양 분야에서 합동 연구반(JSJ:Joint Study Group)을 구성하고 기타의 지역기구를 포함하는 외부 기구들과 협력체계 구축.
 - FPLMTS/UPT
 - ISDN/Satellite
 - CMTT
- 합동 연구반은 작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수반됨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범위에서 구성·운영
- 표준화 분야(TSS)로 이관이 결정된 다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표준화국(TSB)의 국장은 1993년 6월의 CCIR Res. 106 회의에 진행사항을 보고하며, 표준화분야에서 운영을 관리하게 된 CMTT는 합동 연구반 형태의 단일 연구반으로 구성하되 회의 일정은 전파통신분야(TS) 연구반에서의 회의 참석이 용이하도록 현재의 CCIR방송분야 연구반들과 협의하여 개최.
 - CCIR SG4 : Q.69의 전 내용
 - CCIR SG8
 - Q.39-2 : decides 5의 항목6(Network Interface)
 - Q.77 : decides 1의 항목4(육상, 해상, 우주 이동통신을 위한 표준장비)decides 2의 항목 2(집중국에서의 트래픽 제어 능력)
 - Q.82-1 : decides 6
 - Q.89-1 : decides 2.3.4
 - CCIR SG 9
 - Q.137 : decides 1
 - Q.104 : decides 9
 - Q.125 : decides 4
 - Q.153 : decides 1.2.3
 - Q.160 : decides 2.3.6
 - CCIR CMTT:
 - TG CMTT/5를 제외한 총 26개의 기존 및 신규 연구과제들
- 상기 내용이외에도 CCIR SG4, SG8, SG9, SG10, SG11에서 일부 연구과제

들에 대한 표준화 분야로의 이관에 관한 협의를 하였지만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추가로 요구되어져 참여를 원하는 국가들이 모이는 소규모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결정하기로 했고 검토 결과는 3월 핀란드의 WTSC에 제출하여 보고 받기로 하였음.

다. 표준화 분야의 표준 작업절차와 작업방법

CCITT Document APX-23의 Annex는 CCITT에서 수행하는 표준화 작업과정에서 준수 되어야 하는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3월의 핀란드 WTSC에서 결의(현재는 Res.X로 임시번호 부여)로 채택되어 질 예정이며 내용은 CCITT총회, CCITT연구반의 운영, 전기통신 표준화 자문반(TSAG), CCITT위원장의 임무, CCITT 기고서의 제출 및 처리, 연구과제의 개발 및 승인, 권고안 승인의 8개 Section으로 나누어져 있다. CCIR에서도 결의 107에 의거하여 전파통신 분야에서의 표준화 작업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CCITT 내용과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CCITT Ad Hoc Group회의에서는 제1차 WTSC에 보고 할 최종 보고서의 내용을 재검토하고 문안을 최종 확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CCITT총회 관련으로는 기존의 5개 전문 위원회중 기술자문위원회(D위원회)는 개편된 ITU의 산하 기구인 개발국(TDB)업무를 고려하여 해체하고, 총회의 의제분야 및 연구반 의장등의 임명에 따른 절차를 규정.
- 연구반 및 기타 그룹으로는 연구반(SG), 실무작업반(WP), 합동실무작업반(JWP), 특별 라포타 그룹, 합동조정그룹(JCG), 지역그룹(RG)등의 편성 및 기능을 규정하였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표준화 분야와 전파통신 분야간의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연구과제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양 분야의 총회승인을 받아 합동연구반(JSJ)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합동 조정 그룹은 하나 이상의 연구반에 관계되는 포괄적인 연구주제(Subject)에 대하여 선도 연구반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도록 하며 연구반의 수를 최소화 한다는 기본 방침하에 이에 대한 최초의 제한적인 연구분야로 전기통신망관리(TMN), UPT, B-ISDN, Audiovisual/Multi-media Services, 서비스품질(QOS) 및 망성능, FPLMTS, 위성을 통한 ISDN (ISDN/Satellite)을 선정하였으며 UPT와 FPLMTS는 좀 더 연구를 해 나가면서 하나의 JCG로 병행시켜 나가는 것을 검토하였다.

- 연구반(SG)의 운영관리 측면에서 연구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분야의 기술적 내용과 요구되는 관리운영 기법을 충분히 구비한 능력자를 WTSC에서 선출·임명하도록 하였고 합동조정반의 임무, 설치, 운영과 라포타의 역할, 선임, 작업방법, 보고양식, 책임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였다.
- 향후 전기통신표준화 분야의 자문 기능을 수행할 TSAG의 규정에 대해서는 참가국들간의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에 따라 원안내용의 많은 부분에 수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구성원에 대한 논의중 특히 "직권에 의한 참가자(Exofficio Member)"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으로 이를 명확하게 조문화하는 것을 토의, 채택함으로써 TSAG에는 주관청과 협약 제7D조에 의한 기관 및 기구에서의 참석자들, 직권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게 될 연구반 의장 또는 그의 지정을 받은 자 및 전기통신표준화국(TSB)국장을 구성원들로 결정하였다.
- TSAG의 주요 임무는 TSS의 자문 기능을 수행
 - 세계 표준화 활동에 대한 전략을 검토·조사
 - TSS에서 추진중인 표준화 업무 점검
 - 연구반의 업무처리에 대한 지침 제공
 - 기타 국제 및 지역 표준화기구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강구
- 회의는 최소한 매년마다 1회 이상 개최

- 기고서의 제출 및 처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현재의 절차와 동일하며 특히 "연구반이나 실무 작업반의 공위(Interregnum)회의에 제출된 기고서도 모든면에서 정기회의와 같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문안을 추가하여 표준화 작업의 가속화를 유도하였으며 또한 이를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기고서의 Heading양식 중 창구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명시하여 이견에 대한 즉각적인 접촉을 기하도록 보완했다.
- 정상 기고서 : 사무국에 회의개최 2개월 전에 접수, 회원국에게 배포하여 사전검토가 되는 기고서
- 지연 기고서 : 회의 시작 2개월 전부터 사무국에서 근무가 가능한 7일 전까지 접수, 회의가 시작될 때 회의장소에 참석한 참가자에게만 배부되는 기고서
- 임시 문서 : 타 연구반 회의록의 요약내용, 의장 및 스페셜 라포터 또는 초안반의 보고서가 회의개최 2개월 전까지 접수되지 못하였을 때는 회의기간중 회의 참가자에게 배부.
- 사무국이 근무할 수 있는 일자를 기준으로 회의시작 7일 전까지 접수되지 못한 기고서는 회의 의제에 오를 수 없고 배포하지도 않으며 다음 회의시까지 보류
- 표준화과제 선정 및 표준권고(안)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회원국 우편투표제도를 적극 활용
- 권고(안)승인 등은 주로 우편투표제도로 승인 처리되 특수한 사항만 총회에서 검토, 승인

라. 연구반의 업무분담과 책임사항

CCITT Ad Hoc Group에서 작성한 결의 초안 Res. 18/9는 각 연구반에서 작업요구 내용이 중복되지 않게 하며 CCITT작업 프로그램의 일관성이 보장되도록 각 연구반에서의 위임사항이 명확히 정의되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향후의 연구반과 책임분야, 작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반에의 지침을 규정

하고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초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합동 조정반(JCG)의 활동 내역을 추가, 이를 WTSC에 최종 보고서로 제출하기로 하였다.

- 연구반명과 책임 분야에서는 SG VII에 개방형 시스템통신을 추가하여 ISO/IEC JTC1과의 기술적 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SG XV에서는 전송(Transmission)이라는 용어 대신에 전달망(Transport Network)의 용어를 채택, SG XVII은 연구반명을 데이터 및 텔리매틱 서비스를 위한 모델과 전송기술로 완전 수정하였으며, 해체하기로 결정된 현재의 SG IX의 일부 내용을 흡수하고, SG XVIII은 "ISDN"에서 "일반망 측면(General Network Aspects)"으로 변경하였다.
- 작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반에의 지침사항에서는 S 및 U계열 권고는 SG XVII에서 SG I으로 이관하여 관리하기로 하며, SG II에서 모든 망에 대한 번호 부여 및 routing 연구를 수행하되 X.110, X.121, X.122, X.353에 대한 유지관리는 초안대로 SG VII에서 계속 수행, SG XV에서는 전달망(Transport Network)용어가 새로히 등장하게 됨에 따라 초안의 모든 내용에 수정이 가해졌고, SG XVIII에서는 Interface에 대한 권고사항중 "Layer 1특성" 관련 권고안을 "Layer 1에서의 망 능력"관련 권고안으로 수정함으로써 G계열 권고안 일부에 대하여 SG XV와 공동으로 다루기로 하였음.

마. 기타 CCITT총회에 제출될 주요 의결사항

- 표준화 분야에서의 권고 발간에 관한 결의 초안 Res.18/7, Res.18/8과 CCITT텍스트 작성방법에 관한 기준권고 A.15의 수정을 위한 원안 내용들은 별다른 이견없이 채택되어 WTSC에 제출하기로 하였는데 총회에서 승인된 권고안들은 신속히 소책자로 발간한다는 내용에 덧붙여 디스켓, CD ROM등과 같은 전자적 형태로의 발간시에

는 회의 종료후 3개월 이내라는 시한성을 부여하는 문안을 추가하기로 했다.

- 표준화 분야는 세계 및 지역표준화 기구와의 협력 강화
 - 타 표준화 기구의 전문가 및 담당자가 표준화분야의 회의 참석 및 자료 입수등이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 마련
 - 기존 권고 A.20, A.21, A.22의 내용을 수정, 권고 초안 A.23을 채택하여 정보 기술, 텔리매텍서비스, 데이터 전송분야에서의 기타 국제 기구와의 협력을 도모
- 표준화분야의 정보교환 및 자료발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자식 문서기록 및 교환방법(EDH)의 적극 도입
 - EDH는 장기적인 계획하에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방식으로 구현
 - EDH시스템은 회원국가에서 사용하는데 용이하도록 하고 성능 및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축
 - EDH사업에 자문역할을 담당할 별도조직을 두되 TSAG산하기구로 구성·운영

3. 회의참석 소감

- 현재 시행중인 신속 승인절차(Resolution No.2)에서 권고안 채택 여부에 대한 CCITT 회원국 간 주관청들로부터 우편투표 회신기한이 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어질 예정으로 연구단 대응방안 강구 필요
- ITU는 물론 기타 국제 및 지역 표준화기관(ISO/IEC, ETSI, TTC, T1등)의 표준화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및 교류 방안을 수립하고 국내 대응조직 확립등의 국제 표준화 업무 강화 필요
- 제품의 라이프 싸이클이 갈수록 짧아짐에 따라 표준 권고안의 제정, 개정 작업 역시 단축이 불가피하다는 대다수 통신 선진국들의 주장은 단순히 표준화 작업을 가속화한다는 측면보다는 새로운 기술의 채택에

따른 시장은 광대하며, 이러한 시장의 확보 우위는 먼저 개발한 제품의 표준화를 인정 받음으로써 가능하다는 시장 확보의 전략측면에서 표준화 활동에 적극성을 보인다고 생각해 볼 때 2000년대의 통신 선진국(G7) 진입을 목표로 한 우리나라에서는 해당분야별 기술수준 및 전문 인력을 파악·양성하며 국제 표준화 전략 분야를 선정하고,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투자 및 국제회의 참석과 국제 기구와의 활동교류로써 이 분야에서의 국제적 선도화가 필요.

- TSAG이 표준화 우선순위 및 전략을 수립하고 Study Group의 업무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지침을 제안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함에 따라 국제표준화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 TSAG의 제 1차회의가 93.5월 개최 예정임
- 국내에서도 전자문서(EDH)화된 표준정보 및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TTA를 중심으로 한 이용체계 구축 필요
- 급변하는 국제 전기통신 기술 및 정책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결정된 '92년 추가전권위원회회의의 ITU구조 개편내용에 따라 관련된 체신부내의 업무조정 및 연계 방안과 '93년중에 개최될 많은 회의 일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가 준비 필요
- ※참고 : '93주요 회의일정
 - 제1차 WTSC: '93.3.1.~3.12. 핀란드
 - 제1차 TSAG회의: '93.5.5.~5.7. 제네바
 - '93 ASRDC회의 : '93.5.10.~5.15. 싱가포르
 - Telecom '93: '93.5.17.~5.22. 싱가포르
 - CCIR Ad Hoc 회의: '93.6.14.~6.18. 제네바
 - 제1차 RA: '93.11.8.~11.16. 제네바
 - 제1차 WRC: '93.11.15.~11.19. 제네바
 - TSAG/RAG 합동회의: '94.2.~3월경, 제네바
 - 제 1차 개발분야 회의: '94. 1/4분기, 아르헨티나.